

제9조의 제목 “(裁判管轄)”을 “(재판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황 교 안

●법률 제12597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단서의”를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헌인 형벌법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합헌결정에 관계없이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 무 총 리 정 흥 원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연구”를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심에서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사 사건에 기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